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016
----------	-------

발의연월일 : 2025. 9. 16.

발 의 자 : 윤종오 · 전종덕 · 손 솔
최혁진 · 신장식 · 정춘생
서영석 · 김재원 · 임미애
김준형 · 이재강 · 정혜경
김준혁 · 황운하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인권위원회 위원들은 모든 개인이 가지는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해야 함.

그러나 국가인권위원장을 비롯한 일부 위원들이 12. 3. 비상계엄을 옹호하며 다수 시민들의 인권침해를 외면하고, 성소수자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선동하는 등의 행태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이 국내외적으로 크게 추락하고 있음.

나아가 소위원회 위원장을 담당하는 일부 상임위원이 독단적으로 소위원회를 운영하고 관련 회의록도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인권침해와 차별 피해자가 제대로 된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음.

이러한 국가인권위원회의 현 상황은 인권위원의 구성과 추천, 위원

회의 운영에 있어 시민들의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에 원인이 있다 할 것임.

이에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국회를 통한 다수 인권위원 선출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안 제5조 제2항), 인권위원 후보추천위원회를 의무화하여 추천 및 임명 절차에 시민 통제가 이루어지도록 함(안 제5조의2). 또한 제정 이래 인권위의 소관 업무 분야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위원 수는 그대로여서 다양성과 책임성의 구현이 미흡한 점을 고려하여 인권위원 수를 13명으로, 이 중 상임위원의 수는 4인으로 증가시킴(제5조 제1항).

또한 대통령의 인권위원 임명에 있어 국회의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권위원장은 국회의 동의를(제5조 제5항), 상임위원은 국회 청문회를 거치도록 함(제5조 제2항).

아울러 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안건들 중 위원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안건들은 전원위원회에 회부토록 함으로써 인권위원들의 자의적인 회의진행을 막고(안 제13조), 위원회 각 회의의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13조).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3명”을 “4명”으로, “11명”을 “13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국회, 대통령 또는 대법원장은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 받거나 의견을 들은 후 인권”을 “국회, 대통령은 인권”으로, “위원을”을 “제5조의2의 위원후보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위원후보자 중에서 위원을”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상임위원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1. 국회가 선출하는 9명(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다)

⑤ 위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위원후보자추천위원회) ① 제5조제4항에 따른 위원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위원후보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추천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추천위원회의 위원은 제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③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은 국회선출의 경우에는 국회가 추천하는 4인과 위원회가 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선정된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하는 3인을, 대통령이 지명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추천하는 4인과 위원회가 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선정된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하는 3인으로 구성한다.

④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가운데 호선한다.

⑤ 추천위원회는 위원후보자를 추천한 이후 지체없이 후보 명단, 추천 이유 등을 공개하고 상당한 기간 동안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이 경우 수렴한 시민 의견 역시 공개한다.

⑥ 추천위원회는 위원후보자 대상이 소속되었거나 소속된 관계 기관 등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⑦ 추천위원회가 위원후보자를 추천하면 해당 추천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⑧ 그 밖에 추천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위원 중 결원이”를 “위원이 임기를 종료하거나 위원 중 결원이”로, “결원된 날”을 “임기 종료 또는 결원된 날”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출석과 3명 이상의”를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는 상정된 심의·의결된 안건 중 사안의 내용이 중대하거나 파급효과가 광범위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어서 전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속적으로 위원간의 합의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안건을 전원위원회에 회부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의사의 공개) ① 위원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의 의사는 공개한다.

② 위원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의 내용 및 의결 사항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의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0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0조의2(군인권보호관) 군인권보호관은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가가 선출하는 상임위원이 담당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위원장 및 위원의 추천·선출·지명은 이 법 시행일 전에 할 수

있다.

제2조(위원 임기개시에 관한 적용례) 이 법에 따라 최초로 임명된 위원
의 임기는 이 법의 시행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

제3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5조에
따라 임명된 위원으로서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이 법 시행일에 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11명의 인권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 -----4명----- 13명----- -----.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후단 신설>	② ----- ----- . 이 경우 상임위원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1. <u>국회가 선출하는 4명(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다)</u>	1. <u>국회가 선출하는 9명(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다)</u>
2. (생략)	2. (현행과 같음)
3. <u>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u>	<삭제>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④ <u>국회, 대통령 또는 대법원장은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들은 후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관련된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을 선출·지명하여야 한다.</u>	④ <u>국회, 대통령은 인권</u> ----- ----- ----- -----제5조의 2의 위원후보자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위원후보자 중에서 위원을----- -----.
⑤ <u>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장</u>	⑤ <u>위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u>

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⑥ ~ ⑧ (생략)

<신설>

한다.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5조의2(위원후보자추천위원회)

① 제5조제4항에 따른 위원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위원후보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추천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추천위원회의 위원은 제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③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은 국회선출의 경우에는 국회가 추천하는 4인과 위원회가 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선정된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하는 3인을, 대통령이 지명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추천하는 4인과 위원회가 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선정된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하는 3인으로 구성한다.

제7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생략)
② 위원 중 결원이 생기면 대
통령은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

④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가운데 호선한다.

⑤ 추천위원회는 위원후보자를
추천한 이후 지체없이 후보 명
단, 추천 이유 등을 공개하고
상당한 기간 동안 시민들의 의
견을 수렴해야 한다. 이 경우
수렴한 시민 의견 역시 공개한
다.

⑥ 추천위원회는 위원후보자
대상이 소속되었거나 소속된
관계 기관 등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 등
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
에 따라야 한다.

⑦ 추천위원회가 위원후보자를
추천하면 해당 추천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⑧ 그 밖에 추천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이 임기를 종료하거나
위원 중 결원이-----

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13조(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생략)

②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3명 이상의 출석과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제14조(의사의 공개) 위원회의 의사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 상임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임기 종료 또는 결원된 날---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현행과 같음)

② -----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

③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는 상정된 심의·의결된 안건 중 사안의 내용이 중대하거나 파급효과가 광범위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어서 전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속적으로 위원간의 합의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안건을 전원위원회에 회부한다.

제14조(의사의 공개) ① 위원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의 의사는 공개한다.

② 위원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토의 내용 및 의결 사항

제50조의2(군인권보호관) <u>군인권</u> <u>보호관은 제5조제2항제2호에</u> <u>따라 대통령이 지명하는 상임</u> <u>위원이 겸직한다.</u>	<u>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u> <u>보존하여야 한다.</u> ③ <u>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u> <u>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u> <u>률」 제9조 제1항 각호의 사유</u> <u>에 해당하는 경우 의사를 공개</u> <u>하지 아니할 수 있다.</u> 제50조의2(군인권보호관) <u>군인권</u> <u>보호관은 제5조제2항제1호에</u> <u>따라 국회가 선출하는 상임위</u> <u>원이 담당한다.</u>
---	---